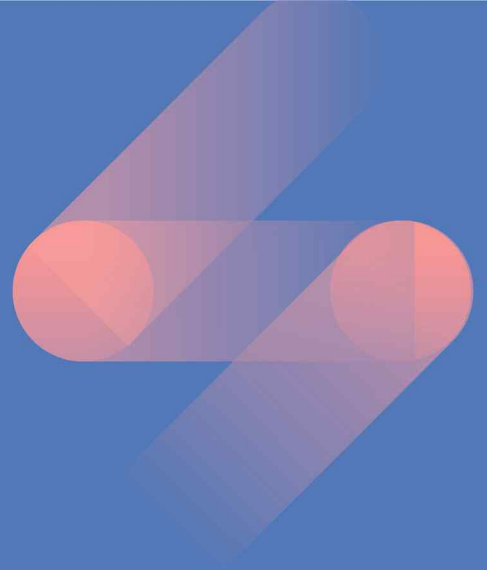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 02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5장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01 2024경기조정101·102/103·104 각 정정·손배청구

|           |  |
|-----------|--|
| 신청인 유형    | 개인                                     |
| 피신청인 매체유형 |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
| 처리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br>(열람차단, 손해배상 100만 원, 기타) |

신청인이 시부모의 재산을 증여받고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고 혼인했음에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정리하고 잠적했다는 보도와 관련, 중재부가 열람차단과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직권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결혼을 전제로 재산 증여를 요구해 온 약사 며느리에게 시부모는 10억 원 상당 재산을 증여하고, 약국을 차려주면서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약국 운영비를 요구하면서도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배분하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폐업하고 잠적하였고 혼인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시부모와 아들은 약사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취재 기자가 약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으나 ‘없는 번호’라고 안내됐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시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신랑의 재산과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약국 정리와 폐업에 관한 내용은 시부모 및 신랑과 사전에 논의를 거쳐 서로가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고, 폐업 당시 시부모에게 약국 투자금 전액을 반환했다고 했다. 그리고 약국 폐업은 시부모 입회하에 진행됐으며, 폐업 당일 물품을 모두 정리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급하게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약정서에는 개업 초기 수익보다 지출이 많을 것을 고려하여 개업 3개월 후 수익 배분을 시작하기로 했기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며, 약국 건물 등 재산의 양도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했다. 덧붙여 피신청인이 연락을 취한 신청인의 전화번호는 사업자용으로, 폐업하면서 말소했다고 밝혔다.

피신청인 보도로 신청인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원이 특정되어 취업이 취소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바, 피해 회복을 위해 매체별로 정정보도와 총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사연을 접하고 취재를 하면서 신청인의 반론을 반영하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성명을 비식별 처리하는 등 기사 작성에 주의를 기울였기에 손해배상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원 보도에 미 반영된 신청인의 반론보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청인은 반론보도보다 정정보도를 희망하며, 정정보도가 어렵다면 열람차단 조치라도 꼭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가 큰 만큼 손해배상도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중재부는 보도에서 비식별처리를 했다 할지라도 보도의 전후 맥락을 통해 신청인을 추지할 수 있고, 기사 댓글에 신청인의 성씨와 기존 근무 장소가 언급되어 있어 독자들이 쉽게 신원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재부는, 제보자 측과 이 사건 신청인 간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해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보도에서 언급한 약정서가 약국의 공동 운영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임대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재부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대신 열람차단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 모두 수용 의사를 보였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재부가 열람차단과 손해배상 1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 열람차단

- 피신청인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댓글 포함)를 열람차단하여 향후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아래 신청인의 계좌로 1,0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02 2024강원조정27 손배청구

|           |             |
|-----------|-------------|
| 신청인 유형    | 개인          |
| 피신청인 매체유형 |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
| 처리결과      | 취하(열람차단)    |

반려견 관련 유튜브 영상에 달린 비판 댓글에 대해 해당 유튜버가 댓글 작성자의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답글을 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피신청인이 사전 취하를 전제로 열람차단을 제안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심리전 취하된 사례

#### 보도내용

반려견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버가 자신의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댓글에 대해 댓글 작성자의 가족 신상(자녀의 성명)을 언급하며 '아이들이나 묶어 다니라'고 조롱하는 답글을 남겨 논란이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댓글 작성자의 신상을 털어 공개한 적이 없고, 단순히 댓글 작성자의 SNS 소개란에 공개된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댓글 작성자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해당 이름을 반려동물 이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론을 듣기 위해 SNS 메시지와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했다고 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고도 했다.

신청인은 해당 보도와 보도에 달린 댓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댓글로 직장 정보가 노출되어 퇴직까지 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SNS 계정에 올린 사과문에는 댓글 작성자의 자녀들 이름으로 인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에 손해배상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 취하를 전제로 열람차단은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일 전 피신청인 의견을 전달받은 신청인은 심리에 출석하지 않고도 피해 확산을 조금이라도 빨리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의견을 수용하고 심리전 취하로 종결됐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12개 매체의 기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 중 10개 사건은 열람차단으로 취하가 되었고, 나머지 2건은 조정불성립결정(1건)과 기각(1건)으로 종결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03** 2024서울조정2317·2318 정정·손배청구

|           |                     |
|-----------|---------------------|
| 신청인 유형    | 개인                  |
| 피신청인 매체유형 | 뉴스통신                |
| 처리결과      | 조정성립(기사수정, 일부 열람차단) |

동료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청인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보도 관련, 독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표현된 신청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기반해 자세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일부 내용은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몰래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공기관 직원 A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평가 점수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A 씨는 URL 끝의 일련번호를 고쳐 타인의 점수를 확인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캡처하여 다른 직원에게 유출했다. 수사 초기 A 씨는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련번호를 바꾸어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 페이지에 접속했다라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불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A 씨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문에 ‘인사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는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하였고 인터넷 주소도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기사의 내용은 동료들이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에 신청인이 불법적으로 접속하고 유출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초기 수사에 전산 담당자로서 “개인정보 보안 점검 및 내부 감사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도 했다. 신청인은 보도 내용의 확산으로 인해 인격을 모독하는 댓글을 받았고, 자신의 신원이 특정되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정정보도는 어려우나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해 판결문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는 방향으로 기사 내용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피해구제 보도문 게재를 전제로 합의하고자 했으나, 중재부는 피신청인의 입장 및 신청인의

## 제5장

###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피해구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사수정을 제안했고, 신청인 또한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재부의 권유에 기반해 제안을 수용,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몰래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 직원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략]**

A씨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한 뒤 해당 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료 직원들로부터 받는 평가 점수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URL 끝 일련번호 등만 바꿔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직원들의 점수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휴대전화 사진으로 갈무리(캡처)된 평가 점수는 일부 직원 사이에 공유됐다.

피고인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점수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개인정보 보안 점검 및 내부 감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해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페이지에 접속했다더라도 이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별도로 부정할 수단 또는 방법으로 불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조정대상보도 중 일부 열람차단 된 부분은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사항

##### 보도방법

- 뉴스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 피신청인은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 기사수정(별지)

###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①〉

(수정 전)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정 후) 다른 사내 간부급 직원에게 전송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및 보관되고있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②〉

(수정 전) 동료 직원들로부터 받는 평가 점수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URL 끝 일련번호 등만 바꿔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직원들의 점수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휴대전화 사진으로 갈무리(캡처)된 평가 점수는 일부 직원 사이에 공유됐다.

(수정 후) 앞서 직원 다면평가 용역 계약을 맡은 B업체는 직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개인별로 부여된 인터넷 주소를 전송해 자신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③〉

(수정 전) 피고인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점수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개인정보 보안 점검 및 내부 감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해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후) 피고인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점수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개인정보 보안 점검 및 내부 감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해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사 전산담당자로서 시스템 보안 개선사항을 체크한 것이고 휴대전화 사진은 직원들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뒷선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④〉

(수정 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페이지에 접속했다라도 이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불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수정 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B 업체가 임직원들에게 본인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주소만 개별적으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만으로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인터넷 페이지의 접근 권한을 해당 평가 대상자인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페이지에 접속했다라도 이를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일부 열람차단

- 조정대상보도 중 ‘……’를 삭제한다.

####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04 2024서울조정981, 2024서울조정982(병합) 각 손해청구

|           |                         |
|-----------|-------------------------|
| 신청인 유형    | 개인                      |
| 피신청인 매체유형 | 유튜브 채널,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
| 처리결과      | 조정성립(기사수정, 동영상 플랫폼 조치)  |

국회의원 후보가 건 현수막의 문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보도 관련, 해당 답변을 한 신청인의 녹취 음성을 식별할 수 없도록 기자의 음성으로 대체하고 리포트 내용도 수정하는 안을 피신청인 측이 먼저 제안하여 합의에 도달한 사례

#### 보도내용

총선을 앞두고 A 정당 후보 J 씨는 “사전투표로 정권심판”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 이를 본 B 정당 후보 Y 씨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이미 J 후보 측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나, Y 후보 측의 항의 이후 내부 지침 등을 재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 신청이유

해당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국회의원 후보 Y 씨 측 관계자 간의 통화 녹취를 내보내면서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직장에서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찍히고, 가족과 지인들은 신청인이 큰 범죄를 저지른 줄 알고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이 형식적인 음성변조를 한 후 허락 없이 녹취파일을 방송에 공개했고, 그 결과 음성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피신청인 언론사별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측은 해당 녹취를 Y 후보 측으로부터 제공받았고 신청인과의 직접 통화하여 관련 취재 사실을 알린 후 신청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취재해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청인은 선거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보도의 취지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신청인의 음성도 충분히 변조하여 보도하는 신중을 기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의 이익을 위해 음성변조 처리 수준을 강화하거나 신청인의 육성을 삭제한 뒤 삭제된 내용을 기자가 재설명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재부는 보도에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의 과실은 없어 보인다는 의견과 피신청인 측이 제안한 방향이 합리적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신청인은 음성 대체만으로 본인에게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중재부는 선관위의 기관 중요도를 고려할 때 보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점, 음성 삭제와 영상 재편집 등 피신청인이 먼저 제안한 안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들어 신청인을 설득하였고, 양 당사자가 해당 안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 지역구 곳곳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4월 총선 사전투표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A당 J 후보 측이 내걸었는데, 문제가 된 건 “사전투표로 정권심판”이란 문구였습니다.

B당 Y 후보 측이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비방하면 안 된다며 지역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이미 선관위는 검토를 통해 전 후보 측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상태였는데, 이후 Y 후보 측이 항의하자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 (Y 후보 측과 통화) : 좀 짹짹해서, 선례를 읽어보니까 ‘위반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심쿵’했어요. 답변이 잘못 나간 것 같아서….]

내부 지침 등을 다시 살펴본 결과 공직선거법을 어겼을 수 있단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겁니다. ‘정권심판’이라는 문구가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 (Y 후보 측과 통화) : 저희 잘못이죠, 뭐 이거는. 중앙에선 이걸 가능하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그게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좀 이렇게 참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후략]**

### 조정성립사항

#### 보도방법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 제5장

###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 기사수정

- 피신청인들은 유튜브 채널 및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 중 신청인의 욕성이 노출된 부분인 ①과 ②를 삭제하고, 기자의 욕성으로 재설명하는 영상으로 편집해 신청인의 욕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조정대상보도 음성 및 리포트 교체 ①〉

| 수정 전 (신청인의 욕성 노출)  | 수정 후 (기자의 욕성으로 재설명)  |
|--|--|
| 이후 Y 후보 측이 항의하자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 (Y 후보 측과 통화) : 좀 짹짹해서, 선례를 읽어보니까 '위반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심쿵'했어요. 답변이 잘못 나간 것 같아서... | 이후 Y 후보 측이 항의하자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선례를 읽어보니까 위반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답변이 잘못 나간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많이 놀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

#### 〈조정대상보도 음성 및 리포트 교체 ②〉

| 수정 전 (신청인의 욕성 노출)   | 수정 후 (기자의 욕성으로 재설명)  |
|---|--|
| [지역 선관위 관계자(Y 후보 측과 통화) : 저희 잘못이죠, 뭐 이거는. 중앙에선 이걸 가능하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그게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좀 이렇게 참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Y 후보 측과의 통화에서 "이번 일은 지역 선관위의 잘못이고 중앙선관위에선 안 되는 쪽으로 답변이 온 것 같다"며 "그래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